

# ISSUE REPORT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2021년 Vol.3

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온라인쇼핑몰업자 VS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무엇이 다른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자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본 건 심사지침") 제정안[1]을 마련하여 2021.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들어 그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 제정안을 2021. 1. 28.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본 건 심사지침과 플랫폼법이 그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적용대상 비교 : 온라인쇼핑몰업자 VS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본 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하위 지침으로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규모유통업자"[3]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식으로 '판매자'의 지위를 가짐). 예를 들어, 오늘날 주요 온라인쇼핑몰업자로는 '쿠팡', '롯데쇼핑', 'SSG닷컴' 등이 있습니다.

---

1 2020. 12. 22.부터 2021. 1. 11.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 플랫폼법 제정안은 2021.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3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를 의미합니다.

반면, **플랫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쇼핑몰업자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뿐 직접 판매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베이코리아',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과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업자 혹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특정한 형태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업자이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이든 양 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자가 각 온라인쇼핑몰 소매업 혹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업을 통해 달성한 해당 매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본 건 심사지침 혹은 플랫폼법이 각 적용됩니다.

| | **온라인쇼핑몰업자**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
|---|---|---|
| **적용 법률** | 대규모유통업법 | 플랫폼법 |
| **개념** |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의 개시를 중개하는 자 |
| **규모 요건** |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혹은<br>② 직전 사업연도의 온라인 플랫폼 상 중개된 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4]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 **예시** | 쿠팡, 롯데쇼핑, SSG닷컴 등<br>(다만, 이들 사업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사업을 겸하고 있음) | • 오픈마켓(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br>•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br>• 배달앱(배달의민족 등)<br>• 숙박앱(야놀자 등)<br>• 가격 비교 사이트(네이버, 다나와 등)<br>•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네이버부동산 등) 등 |

**4** 플랫폼법(정부안)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당시에는 규모요건을 '매출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로 정하였으나, 이에 따를 경우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중소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출처 : 한겨레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80386.html )

## 2. 주요내용 비교 : 사후적 규제 명확화·구체화 VS 사전적 규제 강조

**본 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 심사지침 중 불분명한 용어,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전제로 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5]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 심사지침은 온라인거래의 특징상 판촉행사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개별 약정 체결로 인한 거래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구체적 예측이 가능한 범위(예: 분기당 1회 등)'에서 완화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등)'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 체결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사전약정 및 판매촉진비용 50%이상 분담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에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기획·고지한 사실이 있거나 납품업자와 협의한 정황만으로 자발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플랫폼법**은 ①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②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에 고지되어야 할 사항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사전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사전적 규제 강화**).

---

5 한편, 본 건 심사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 1. 1.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본 건 심사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폐지될 예정입니다(본 건 심사지침이 내용 포괄).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이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 6. 4.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합니다.

플랫폼법의 사전적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의무 유형</th><th colspan="2">구체적 내용</th></tr>
<tr><td rowspan="2">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td><td colspan="2">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td></tr>
<tr><td>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주요내용[6]</td><td>•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br>•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br>•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br>•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등</td></tr>
<tr><td rowspan="4">사전통지 의무</td><td colspan="2">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혹은 서비스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입점업체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함</td></tr>
<tr><td>• 계약 내용 변경</td><td>시행령으로 규정/ 불이행 시 효력 부인</td></tr>
<tr><td>• 서비스 제한·중지</td><td>최소 7일 이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td></tr>
<tr><td>• 서비스 종료</td><td>최소 30일 이전/ 불이행 시 효력 부인</td></tr>
</table>

6 참고로, 입법예고 당시의 플랫폼법 제정안에서는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법 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③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 3.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건 심사지침과 플랫폼법은 그 적용대상(개념) 및 규제의 성격, 구체적 내용 등에 있어서 전혀 별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바,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법의 적용대상(규모요건) 및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질 예정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 등의 제정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모** 변호사
**공정거래, 형사, 민사, 기업자문**
E smkoo@draju.com
T 02-3016-5349



**이정란** 변호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행정소송**
E jrlee@draju.com
T 02-3016-5365



**장성경** 변호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건설/부동산**
E skjang@draju.com
T 02-3016-5255



**이경민** 변호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건설/부동산**
E kmlee@draju.com
T 02-3016-8746